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17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이정헌・김우영・정동영

박선원 • 박홍배 • 허성무

민병덕 • 이해민 • 김교흥

김 현 · 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 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 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 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등) ①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에 필요한 경비, 연구 개발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 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제43조의2(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등) ①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인공지능 전문교원양성과정의 당성과정에 필요한경비,연구개발 및 그밖의활동을지원할수있다.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학생들의인공지능활용을 포함한디지털역량강화를위하여관련교과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인공지능전
	<u> 령령으로 정한다.</u>